

#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7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존속기한이 도래(2015. 12. 31.)되는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
-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(市직영)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, 정산 등 필요한 사항 명기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의2)
- 나.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(안 제9조)
- 다. 세월호 피해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 등의 지원방법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 (안 제10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있음

○ 입법예고 : 2015. 3. 31. ~ 4. 20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○ 입법예고 결과보고 1부.

○ 방침결재문 1부.

#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2015년” 을 “2019년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보칙) ① “4.16세월호참사”로 인한 집중 피해지역인 와동, 고잔동, 선부동의 마을만들기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마을만들기는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준용)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여 환 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희망마을지원계장 김 행련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 남진 (행정 3094)

[신구조문대비표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)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15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	제4조의2(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19년</u> ----- ----
제7조(위탁운영 등) ① ~ ③ (생 략) <u>④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한다.</u>	제7조(위탁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<신 설>	제9조(보칙) ① “4.16세월호참사”로 인한 집중 피해지역인 와동, 고잔동, 선부동의 마을만들기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②제1항에 따른 마을만들기는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 등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제9조(생략)	제11조(현행 제9조와 같음)

#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3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5. 21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세월호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행주체 및 수행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함.

## □ 주요골자

- 4.16세월호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요건으로서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비로 더욱 명확히 정함.(안 제9조제1항)
- 세월호참사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운영 대상에서 배제한 개정안을 수정하여 위 사업을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

# **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9조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” 를 “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수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월호참사 집중 피해지역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9조(보착) ① “4.16세월호 참사”로 인한 집중 피해지역인 와동, 고잔동, 선부동의 마을만들기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마을만들기는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(보착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집중 피해지역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.</p>